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2554
----------	------

제출일자 : 2024. 8. 26

제출자 : 달성군수



## 1. 제안이유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의 위탁기간 만료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현황

위탁대상	위탁기간(최초위탁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1992. 11. ~ 현재

###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실시(년 1회)  
(대상 : 관내 옥외광고사업 등록 종사자 45개 업소)

### 다. 조직 및 구성

구분	사무처장	부장	직원	계
인원	1	2	4	7

라. 위탁기간 : 3년(2024. 10. 26. ~ 2027. 10. 25.)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평균 70점 이상 시 재계약)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3. 8.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성과평가 실시)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 결정

아. 성과평가 결과 : 적합

※ 달성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붙임첨부

자. 향후일정

- 2024. 9. : 임시회 재계약 동의안 제출
- 2024. 9. : 재계약(재위탁) 적정성 여부 결정 통보
- 2024. 9. : 협약 체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5조, 제6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 제21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전문개정 2023. 4. 28.)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4. 28.)

**제4조의3(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

24. 4. 1.)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3. 4. 28.)

(제목개정 2024. 4. 1.)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4. 28.)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23. 4. 28.)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4. 1.)

1. 수탁기관의 선정(신설 2024. 4. 1.)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신설 2024. 4. 1.)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4. 4.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개정 2024. 4.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4. 1.)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4. 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4. 28.)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 구성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0. 28., 2024. 4. 1.)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 2017.12.29.)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

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2.29.)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7.10)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 제21조(교육의 위탁 등)

-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을 정하여 그를 공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개정 2017.12.29.)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개정 2017.12.29.)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0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 1 기본 검토사항

대상 사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 민간위탁
민간위탁 추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물 교육으로 광고업자 능력 향상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li> <li>○ 지역 광고문화 선진화에 기여</li> </ul>
위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li> <li>-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li> <li>-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li> </ul> </li> </ul>
위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과-13255(2021. 10. 7.)</li> </ul> </li> <li>○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위탁 : 1992. 11. ~</li> <li>- 재계약 이후 위탁 : 2024. 10. 26. ~ 2027. 10. 25.</li> </ul> </li> <li>○ 위탁기간: 3년</li> <li>○ 위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실시(년 1회)</li> <li>(대상 : 관내 옥외광고사업 등록 종사자 45개 업소)</li> </ul> </li> </ul>

<p>적 정 성 토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운영 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을 교육할 강사의 채용이 어렵고 교육의 질 저하 예상</li> </ul> </li> <li>○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현수막 게시 업무 등 다양한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이 높음</li> </ul> </li> <li>○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로부터 받는 교육비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예산이 없음</li> </ul> </li> <li>○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랜 기간 종사자 교육을 수탁하면서 깊이 있는 교육방침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전문지식 또한 갖추고 있음</li> </ul> </li> <li>○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교육 완료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의 현황, 주소, 이수일 등 목록화함으로써 성과측정 용이</li> </ul> </li> <li>○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달성군 조례에 의거하여 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음</li> </ul> </li> </ul>
<p>기 존 수 탁 기 관 및 선 정 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명: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li> <li>○ 수탁기간: 2021. 10. 26. ~ 2024. 10. 25.</li> <li>○ 위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공고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li> </ul>
<p>수 탁 기 관 선 정 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li> <li>○ 현 수탁기관: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 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li> </ul> </li> </ul>

<p>기 대 효 과 및 향 후 계 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강사 확보와 양질의 교육으로 지역의 광고문화 선진화 기여</li> <li>○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로 불법 광고물 제작 및 게시 근절</li> <li>○ 군청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li> </ul>
<p>전 문 가 의 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함이 적격함을 의결함</li> </ul>

## 재계약 사유서

<b>현황 및 여</b>	○ 해당 사업의 수탁 가능 업체 수: 총 1개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																						
<b>재계 사</b>	○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 ○ 재계약 사유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 의결																						
<b>대상기관 검토내용</b>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2px;">위탁사무명</td> <td style="padding: 2px;">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 민간위탁관리</td> </tr> <tr> <td style="padding: 2px;">예산 및 기간</td> <td style="padding: 2px;">예산 없음 / 2024. 10. 26. ~ 2027. 10. 25.</td> </tr> <tr> <td style="padding: 2px;">대상기관명(대표자)</td> <td style="padding: 2px;">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대표 : 황태하)</td> </tr> <tr> <td style="padding: 2px;">주요사업</td> <td style="padding: 2px;">안전점검업무 사업, 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 사업,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업무 사업 등</td> </tr> <tr> <td style="padding: 2px;">설립일자 및 주요연혁</td> <td style="padding: 2px;">1992. 11. ~ 최초위탁</td> </tr> <tr> <td style="padding: 2px;">인력현황</td> <td style="padding: 2px;">사무처장 1명, 부장 2명, 직원 4명</td> </tr> <tr> <td style="padding: 2px;">근로자 고용안전성</td> <td style="padding: 2px;">정규직비율: 100%      이직률: 0%</td> </tr> <tr> <td style="padding: 2px;">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td> <td style="padding: 2px;">총재산 : 240,407천원 - 고정자산 및 보조금 : 141,780천원 - 유동자산 : 98,627천원 부채 : 74,372천원 수입 : 385,615천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td> <td style="padding: 2px;">사무실, 교육시설 등 장비 확보</td> </tr> <tr> <td style="padding: 2px;">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td> <td style="padding: 2px;">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2021~2024년)</td> </tr> <tr> <td style="padding: 2px;">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td> <td style="padding: 2px;">성과평가 결과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td> </tr> </table>	위탁사무명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 민간위탁관리	예산 및 기간	예산 없음 / 2024. 10. 26. ~ 2027. 10. 25.	대상기관명(대표자)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대표 : 황태하)	주요사업	안전점검업무 사업, 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 사업,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업무 사업 등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1992. 11. ~ 최초위탁	인력현황	사무처장 1명, 부장 2명, 직원 4명	근로자 고용안전성	정규직비율: 100%      이직률: 0%	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	총재산 : 240,407천원 - 고정자산 및 보조금 : 141,780천원 - 유동자산 : 98,627천원 부채 : 74,372천원 수입 : 385,615천원	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	사무실, 교육시설 등 장비 확보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2021~2024년)	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성과평가 결과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
위탁사무명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 민간위탁관리																						
예산 및 기간	예산 없음 / 2024. 10. 26. ~ 2027. 10. 25.																						
대상기관명(대표자)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대표 : 황태하)																						
주요사업	안전점검업무 사업, 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 사업,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업무 사업 등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1992. 11. ~ 최초위탁																						
인력현황	사무처장 1명, 부장 2명, 직원 4명																						
근로자 고용안전성	정규직비율: 100%      이직률: 0%																						
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	총재산 : 240,407천원 - 고정자산 및 보조금 : 141,780천원 - 유동자산 : 98,627천원 부채 : 74,372천원 수입 : 385,615천원																						
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	사무실, 교육시설 등 장비 확보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2021~2024년)																						
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성과평가 결과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																						

※ 재계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1. 수탁기관명 및 대표자 :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 (대표: 황태하)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산업용재관 업무동  
(기업은행건물) 2층  
(Tel. 053-604-4383)
3. 설립목적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의 2와 동시행령 제41조의 2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

4.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1982. 09. 09.	사단법인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 설립허가
1994. 04. 01.	안전도검사 위탁업무 개시
2001. 04. 02.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업무 수탁
2003. 10. 27.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업무 수탁
2004. 10. 27.	극장(시민)벽보판 관리업무 수탁
2004. 04. 26.	협회명칭 변경 “한국옥외광고협회 대구광역시지부”
2011. 03. 04.	대구옥외광고협회 법인 설립
2021. 06. 14.	협회명칭 변경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5. 주요사업

-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한 사업
- 광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 시책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 광고물 등에 관한 안전점검, 현수막지정게시대·옥외광고업 종사자 법정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 신기술도입 및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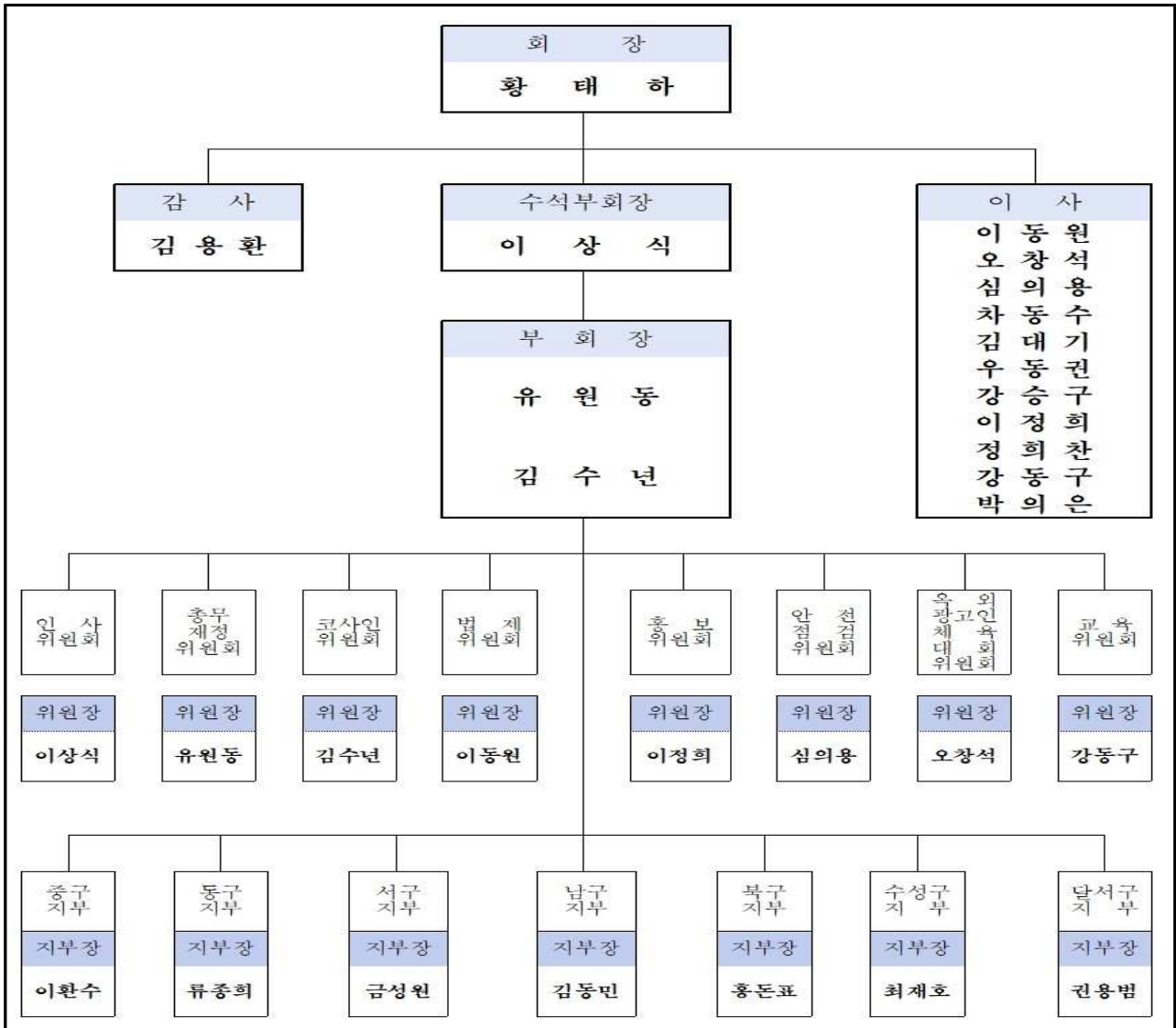
##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회장	황태하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회장(현) -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이사 - (주)한신후렘 대표
감사	김용환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감사(현)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부회장 역임 - 협신애드 대표
수석부회장	이상식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수석 부회장(현)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조직위원장 역임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장 역임 - 대신기획, 대신광고공사 대표
부회장	유원동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부회장 겸 총무재정위원장(현) - 대구광역시 옥외광고협회 달서구지부 지부장 역임 - 날으는 곰 대표
부회장	김수년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부회장 겸 코사인위원장(현) - 대구광역시옥외광고협회 동구지부장 역임 - 광고회사 한강 대표
이사	오창석	- 대우광고사
이사	이동원	- 마루광고
이사	심의용	- 대성에스씨
이사	차동수	- 해광애드
이사	김대기	- 세움싸인테크
이사	우동권	- 휴먼광고사
이사	강승구	- 나이스광고
이사	이정희	- 브라운애드종합광고
이사	정희찬	- 선우
이사	강동구	- 아세아아트팩토리
이사	박의은	- 에스제이디자인
중구 지부장	이환수	- 한애드
동구 지부장	류종희	- 대영광고
서구 지부장	금성원	- 단지애드
남구 지부장	김동민	- 디올디자인
북구 지부장	홍돈표	- 개미광고
수성구 지부장	최재호	- 호야엔터테인먼트
달서구 지부장	권용범	- 애드란광고

7. 직원현황: 총 7 명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사무처장	이호원	옥외광고사	관리감독	2022.3. ~	정규직
부 장	공희남	전기기능사	전기	2012.6. ~	정규직
부 장	한승달	건축기사	건축	2012.7. ~	정규직
대 리	조수임	-	회계	2022.5. ~	정규직
팀 장	윤아현	-	게시대,벽보	2023.6. ~	정규직
주 입	이상윤	-	게시대,벽보	2024.4 ~	정규직
사 원	심의용	옥외광고사	옥외광고사	2017.11. ~	정규직

8. 조직도



9. 재무현황

가. 재 산 : 총 240,407 천원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기타재산	당좌(현금)	예금	98,627
기본재산	부동산	보증금 및 고정자산	141,780

나. 부 채: 총 74,372 천원

내 용	금 액(천원)
미지급 결제(차량 구입 할부금) 등	74,372
보증금 및 고정자산	-

다. 수 입: 총 385,615 천원

내 용	연 수입액(천원)
회 비	56,330
안전수수료, 광고료, 교육 수수료 기타등등	330,285

10. 재협약 현황 및 향후 계획

<p>재협약 현황</p>	<p>○ 재협약 횟수: 3 회 (최근 10년 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 10. 26. ~ 2018. 10. 25. (공개모집 공고를 통한 협약)</li> <li>- 2018. 10. 26. ~ 2021. 10. 25. (공개모집 공고를 통한 협약)</li> <li>- 2021. 10. 26. ~ 2024. 10. 25. (공개모집 공고를 통한 협약)</li> <li>- 2024. 10. 26. ~ 2027. 10. 25.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의결)</li> </ul>															
<p>사업추진 실적</p>	<p>○ 최근 3년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실적</p> <table border="1" data-bbox="368 862 1412 1171"> <thead> <tr> <th>년도</th> <th>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건수</th> <th>교육 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td> <td>집합교육 6회, 113개 업소</td> <td>3,390,000원</td> </tr> <tr> <td>2021</td> <td>집합교육 2회, 35개 업소</td> <td>1,050,000원</td> </tr> <tr> <td>2022</td> <td>집합교육 2회, 40개 업소</td> <td>1,200,000원</td> </tr> <tr> <td>2023</td> <td>집합교육 2회, 38개 업소</td> <td>1,140,000원</td> </tr> </tbody> </table>	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건수	교육 수수료		집합교육 6회, 113개 업소	3,390,000원	2021	집합교육 2회, 35개 업소	1,050,000원	2022	집합교육 2회, 40개 업소	1,200,000원	2023	집합교육 2회, 38개 업소	1,140,000원
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건수	교육 수수료														
	집합교육 6회, 113개 업소	3,390,000원														
2021	집합교육 2회, 35개 업소	1,050,000원														
2022	집합교육 2회, 40개 업소	1,200,000원														
2023	집합교육 2회, 38개 업소	1,140,000원														
<p>성과평가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일시: 2024. 8월</li> <li>○ 평가기관: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li> <li>○ 평가내용: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li> <li>○ 총 평: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의결</li> </ul>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2회 보수교육 강화로 광고업자 지식 함양</li> <li>○ 불법광고물 제작 및 게시 근절을 위한 군청과 협회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li> </ul>															

**참고**

**심사집계표**

**심 사 집 계 표**

심사결과(점수)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합계	평균							
418	83.6	81	84	84	85	89	94	94

※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점수 합계 및 평균

심사위원 개별심사표를 집계한 결과, 평균점수 83.6 점으로 위 기관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제계약 기관으로 선정함이 적정 부적정 한 것으로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2024. 8. 17.

위 원 장 부 군 수 배춘식 (서명)  
 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서명)  
 위 원 박순옥 (서명)  
 위 원 성모경 (서명)  
 위 원 이돈일 (서명)  
 위 원 김수홍 (서명)  
 위 원 박주용 (서명)

## 심 의 의 결 서

심의안건	▶ 옥외광고업자 종사자 교육 위·수탁 재계약 심의																												
심의요지	▶ 심의대상 수탁기관 - 수탁법인 :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 - 재계약 기간 : 2024. 10. 26 ~ 2027. 10. 25																												
의결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15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자 종사자 교육 위수탁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 결과 재계약이 <u>적정</u> / 부적정 함을 의결함.																												
<p>위와 같이 의결한다.</p> <p>2024 . 8 . 19 .</p> <p>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40%;">위원장</td> <td style="width: 20%;">부 군 수</td> <td style="width: 20%;">배춘식</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배춘식)</td> </tr> <tr> <td>부위원장</td> <td>건설도시국장</td> <td>석주홍</td> <td style="text-align: right;">(석주홍)</td> </tr> <tr> <td>위원</td> <td></td> <td>박순옥</td> <td style="text-align: right;">(박순옥)</td> </tr> <tr> <td>위원</td> <td></td> <td>성모경</td> <td style="text-align: right;">(성모경)</td> </tr> <tr> <td>위원</td> <td></td> <td>이돈일</td> <td style="text-align: right;">(이돈일)</td> </tr> <tr> <td>위원</td> <td></td> <td>김수홍</td> <td style="text-align: right;">(김수홍)</td> </tr> <tr> <td>위원</td> <td></td> <td>박주용</td> <td style="text-align: right;">(박주용)</td> </tr> </table>		위원장	부 군 수	배춘식	(배춘식)	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석주홍)	위원		박순옥	(박순옥)	위원		성모경	(성모경)	위원		이돈일	(이돈일)	위원		김수홍	(김수홍)	위원		박주용	(박주용)
위원장	부 군 수	배춘식	(배춘식)																										
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석주홍	(석주홍)																										
위원		박순옥	(박순옥)																										
위원		성모경	(성모경)																										
위원		이돈일	(이돈일)																										
위원		김수홍	(김수홍)																										
위원		박주용	(박주용)																										